

제7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 및 분과위원 공개모집 공고

국가 가스산업 발전 및 가스안전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가스 기술기준(KGS 코드)의 제·개정과 운영을 위하여 제7기 가스기술기준 위원 및 분과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고 국가 가스안전 발전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.

2026. 7. 1.

산업통상부장관

1. 관련근거 :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3조의2(가스기술기준위원회)
2. 위촉위원 : 가스기술기준위원 00명, 분과위원 00명
 - 위촉기간 : 2026년 12월 ~ 2029년 11월 (3년)
 - 주요역할 : 가스기술기준(KGS Code)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심의
3. 신청방법
 - 신청양식 : 위원 신청서 작성 제출
 - ※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: KGS코드 홈페이지(<http://www.kgscode.or.kr>) 참조
 - 신청기한 : 2026년 7월 1일 ~ 8월 31일 18:00
 - 제 출 처 : 전자우편 (kgscode2@kgs.or.kr)
 - 문 의 처 :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(☎ 043-750-1320, 1324)

4. 위원자격

① 가스기술기준위원

-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·화공·금속·안전관리·토목·건축·전기·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기계·화공·금속·안전관리·토목·건축·전기·전자 또는 가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가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
-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

② 분과위원

-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·화공·금속·안전관리·토목·건축·전기·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기계·화공·금속·안전관리·토목·건축·전기·전자 또는 가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학사 학위 또는 기사 또는 기능장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가스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부장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
-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

5. 위원선정 및 결과 발표

- 가스기술기준위원 : 산업통상부 장관 위촉
- 분과위원 : 가스기술기준위원장 위촉
- 결과발표 : 2026. 11월 중 개별 통보 예정

산업통상부 · 가스기술기준위원회사무국